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 2. 10 선고 2021나12523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B단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 담당변호사 김종숙

변 론 종 결 2021. 11. 11.

판 결 선 고 2022. 2. 10.

제1 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가합50310 판결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70,1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126,1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봐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9쪽 [별지3]의 표 ‘운용방법 등’란의 제3행의 “아니한 대에도 면책하지 아니함”을 “아니한 때에도 면책하지 아니함”으로 고치고,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강조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제1심에서 한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제시외 건물을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정한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그 기한 이후에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확인되는 선순위 채권액은 원고와 피고 모두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위 선순위 채권액을 알 수 없는 경우 설정최고액을 선순위 채권액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 선순위 채권액을 산정함에 있어 그 당시 해당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면서도 막상 피고가 위 기한 후에 그 채권액을 알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이 사건 약관 및 보증서의 내용에 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와 보증기관 사이에 끊임없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선순위 채권액은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의 설정최고액인 8억 3,800만 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판단

우선 제시외 건물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① 제시외 건물은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과 함께 감정평가금액의 산정이 가능하였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과 함께 일괄매각이 이루어진 점, ② 이 사건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농업회사법인 K 주식회사가 제시외 건물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제시외 건물에 해당하는 매각대금도 채권자들에게 배당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시외 건물은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과 마찬가지로 C의 책임재산으로 다루어졌으므로, 제시외 건물을 장애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

다음으로 선순위 채권액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이에 관한 주장은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에 피고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 당시 바로 선순위 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에 선순위 채권액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설정최고액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확정하여야 하며, 비록 피고가 나중에 선순위 채권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선순위 채권액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사건 면책기준에서 말하는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는 선순위 채권액의 산정 기준일 뿐 피고가 선순위 채권액을 파악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피고가 채권보전조치 기한 당시에 파악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액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후에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순위 채권액을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의 주장

가) 피고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었는지는 면책범위 판단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보는 것은 신용보증면책기준을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해석한 것이다.

나) 제1심판결(제13쪽 제4, 5행)이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4131 판결)는 채권자가 통지기한 내에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아니하여 신용보증기관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이는 단지 채권보전조치의 시기가 지체된 것에 불과한 반면, 이 사건은 채권자인 원고가 기한 내에 채무자 C의 재산에 채권보전조치 자체를 하지 않은 사안으로 단순히 채권보전조치의 시기가 늦어진 것과 다르다.

다)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원고의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가 기한 내에 이루어졌을 경우 피고의 가압류 청구금액이 다액이어서 이후 근저당권부 금전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F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제외하고 면책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① 신용보증면책기준의 면책항목으로 “관리기관(기금)의 구상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경우”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② 신용보증면책기준의 ‘운용방법 등’란에 “구상권행사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담보권설정, 기타의 방법으로 구상권 회수가 확실한 경우에는 면책하지 아니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통지의 지체, 채권보전조치 해태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의 면책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하여 면책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공평하고 합리적인 해석이다.

나) 그리고 피고의 채권회수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 경우에 한하여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을 인정하는 이상 그 사유가 채권보전조치를 지체하였는지 아니면 채권보전조치를 아예 누락하였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다) F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채권보전조치 기한 후에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F의 근저당권 설정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사건(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가단10826호)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48,535,200원으로 줄이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설령 F의 채권이 채권보전조치 기한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① F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채권은 그 설정 후에 이루어진 가압류의 청구채권보다 선순위에 있게 되는 점, ② 제시외 건물을 포함한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의 감정가는 약 9억 원에 이르고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일반채권자들도 배당받은 점, ③ 최초 F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2억 2,000만 원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별지1 기재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채권보전조치 기한 내에 가압류를 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F가 그 가압류 때문에 C와 사이에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남양우, 판사 박규도, 판사 김윤석